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관련 지정요양기관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에 관련된 진료비(급여 및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고운맘 카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한 소개, 지원금 사용범위 및 결제방법, 지정요양기관 신청 및 변경 절차 등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지정요양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13.3.2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내용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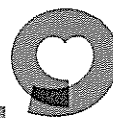
☎ 고운맘카드 지원금 결제방법 문의

— 신한 카드 : 1544-6300 (전담 콜센터)

— KB국민카드 : 1599-7900 (전용 콜센터)

※ 동일한 내용을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s.or.kr)의 '요양기관 공지사항' 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지정요양기관 안내문 1부.



1. 고운맘카드란 ?

-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에 관련된 진료비(급여 및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이용권이며, KB국민카드사와 신한카드사에서 발급

2. 지원액 및 사용범위

임신 1회당 지원금	지원금 1일 사용한도
50만원	제한없음 ... '13.4.1 시행
※ 다태아(쌍둥이)임신부는 70만원 지원	※ '13.3.31이전에는 분만입원비 외에는 1일 사용한도(6만원)가 적용

3. 제도 소개

- (지원대상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받아 공단지사, KB국민은행(국민카드)·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우체국에 지원신청
- (지원범위)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급여, 비급여 모두 포함)받은 비용
- (사용방법)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후 본인부담금 납부 시 결제
- (사용기간) 고운맘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 까지
- ※ 지원신청시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이며, 실제 출산일이 아님
- (지정요양기관) 고운맘카드 지원금 결제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 신청을 해야 하며, 비급여검사 비용(초음파 영상, 양수검사, 한약첩약)을 공개하여야 함

II 제도 개선사항 안내 ... '13.4.1.부

1. 고운맘카드 이용 한방의료기관 확대

○ 고운맘카드 이용이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까지 확대

※ 단,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산후풍) 상병에 지원

2. 지원금 1일 사용한도 폐지 ... 지원금 승인방법 변경

○ 지원금 1일 사용한도 제한이 폐지되어, 잔액 한도내에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시 '지원금 승인코드' 변경됨

- 지원금 이용금액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던 '지원금 승인코드' 를 의료이용패턴(양방, 한방)에 따라 별도 관리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 신청방법 변경

○ 경로 : (기존)대한의사협회 경유 제출 ⇒ (변경)공단 지사 직접 제출

○ 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신청 외에 지정요양기관 신청을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회원서비스/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정요양기관 신청메뉴에서도 가능 ... '13.3.25 오픈

III 고운맘카드 지원금 결제방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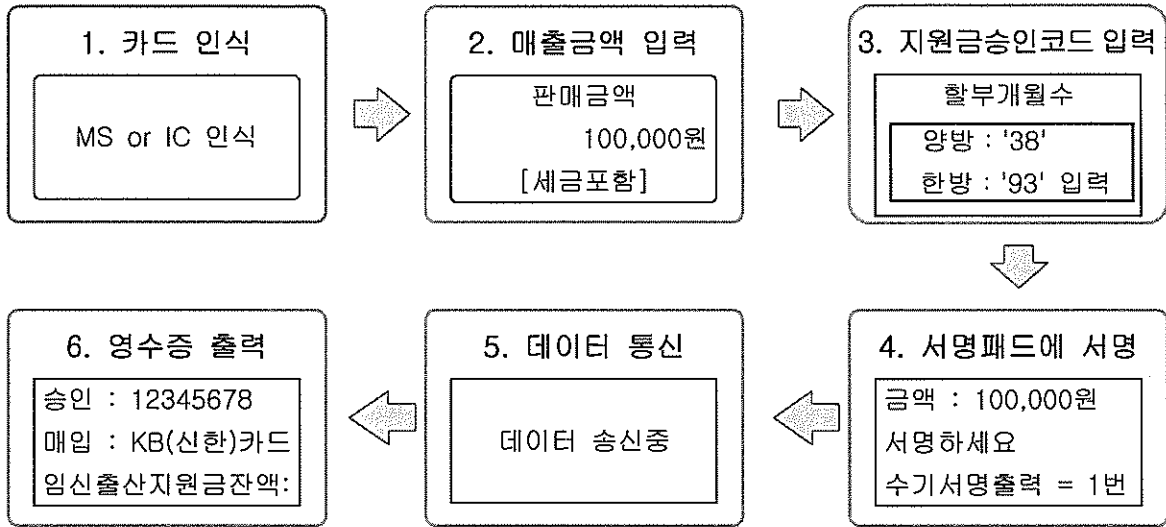
2013년 4월 1일부터 고운맘카드로 결제 시 지원금 적용을 받기 위한 '지원금승인코드'가 변경됩니다. '지원금 승인코드' 미입력시,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고, 수진자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 '13.4.1.부터 지원금 1일 사용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이용금액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던 '지원금 승인코드'를 의료이용패턴(양방, 한방)에 따라 별도 관리

1. 고운맘카드 지원금 결제방법 변경 ... '13. 4. 1. 부터 적용

지원금 승인코드	'13.3.31 이전	지원금 승인코드	'13. 4. 1 이후
'93' 코드 입력	분만입원비	'93' 코드 입력	한방의료기관
'38' 코드 입력	그 외	'38' 코드 입력	양방의료기관

2. 지원금 결제방법



3. 일시불 또는 할부거래에 따른 결제방법

- (일시불) 총 매출금액 입력 후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 입력 (1회 승인처리)
- (할부거래) 지원금 사용금액 입력 후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 입력하여 승인처리 후, 잔여 본인부담금은 일반 신용카드 매출과 동일하게 별도 결제 처리 하여야 함 (2회 분할승인) ... 지원금은 할부이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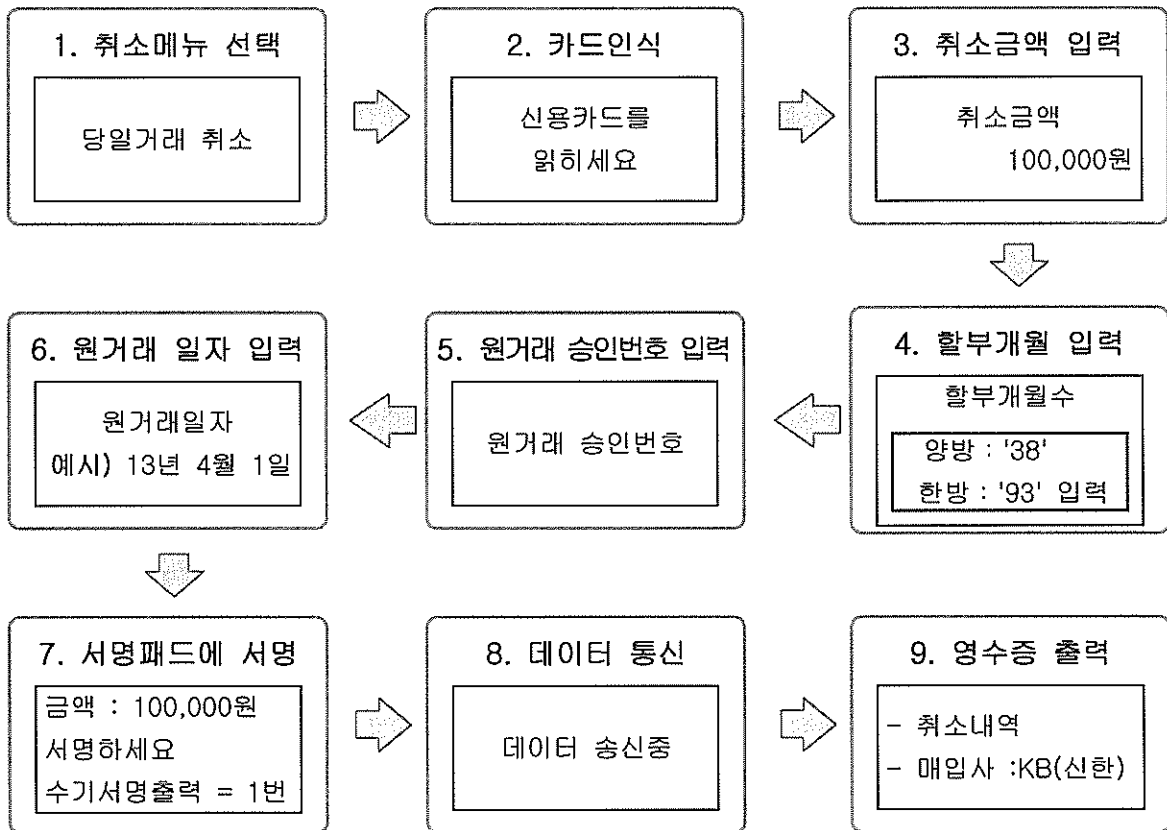
ex) 총 결제금액 80만원 결제 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50만원 결제)

- 본인부담금 30만원을 일시불 결제시 : 1회 승인처리
 - i) 단말기에 80만원 입력 / '지원금 승인코드' 입력
 - 지원금 50만원 + 본인부담금 30만원 일시불 승인처리
- 본인부담금 30만원을 3개월 할부 결제시 : 2회 승인처리
 - i) 단말기에 50만원 입력 / '지원금 승인코드' 입력 → 지원금 50만원 승인
 - ii) 단말기에 30만원 입력 / 할부개월수에 3개월 입력 → 본인부담금 30만원 3개월 할부 승인

4. 결제 취소 방법

- (직전거래 건에 대한 취소시) 카드 **swiping**(카드통과) 불필요
- 직전거래 건에 대한 취소는 카드 통과가 필요하지 않으며,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취소하시면 됩니다.

㉞ (당일거래 건에 대한 취소시) 카드 **swiping**(카드통과) 필요



㉞ (지원금 취소에 따른 포인트 안내) 지원금 취소거래시, 취소된 지원금 포인트는 취소일 2~3일 이후 생성됨

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확인방법

신한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홈페이지(http://www.shinhancard.com)/개인/우측하단 전용회원서비스/복지카드회원/고운맘카드사용 내역조회 (또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고운맘카드" 검색후 조회 가능) ② 고운맘카드 전담 콜센터(1544-6300) ARS 안내 : 주민번호 or 카드번호 입력 ⇒ 1번 ③ 고운맘카드 전담 콜센터(1544-6300) 상담원 연결 : 주민번호 or 카드번호 입력 ⇒ 2번 ④ 직전 지원금 사용 시 SMS 및 카드전표
KB국민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홈페이지(http://www.kbcard.com)/카드/카드신청/'고운맘'키워드 검색/고운맘 카드 잔여포인트 ② 고운맘카드 전용 콜센터(1599-7900) ARS 안내 : 2번 ⇒ 1번 ③ 고운맘카드 전용 콜센터(1599-7900) 상담원 연결 : 2번 ⇒ 0번 ④ 직전 지원금 사용 시 SMS 및 카드전표

IV 지정요양기관 신청 및 변경 안내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 신청

㉠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팩스, 우편, 방문신청

-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medi.nhis.or.kr>) /회원서비스/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정요양기관 신청(건강보험) 메뉴에서 신청 ... '13.3.25 오픈
- 팩스, 우편, 방문신청 ... 관할 공단지사에 신청('13.3.25이후)

구분	주체	내용
요양기관 개설 ↓	요양기관 및 심사평가원	• 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개설신고하여 <u>요양기관기호</u> 부여
가맹점 계약 및 카드 단말기 구매 ↓	요양기관	• 가맹점 계약 (신한카드, KB국민카드) • 카드 단말기 구매 (일반단말기 이용)
지정 요양기관 신청 ↓	요양기관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신청서』 제출 ...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신청 ※ 비급여검사 비용 기재하여 신청
지정등록 ↓	국민건강보험	• 신청서 접수 및 지정요건 확인 및 등록 ※ 통상적으로 지정등록처리한 다음날부터 수납가능
서비스 제공 및 수납	요양기관	• 임신부에게 진료 실시 및 고운맘카드 수납

2. 지정요양기관 변경신청

㉠ 비급여검사(초음파 영상, 양수검사, 한약첩약) 비용이 변경되었을 시,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제출

3. 그 외 주의사항

㉠ 서식안내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

㉠ '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되었을 시, 공단에 지정요양기관 재신청

예시) 요양기관기호 변경 : 12345678 ⇒ 87654321

- '요양기관기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공단에 지정요양기관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평가원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고한 뒤,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가맹점 계약을 반드시 하여야 함

예시) 요양기관기호 동일 : 12345678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888-88-88888 ⇒ 999-99-99999

- ※ KB국민카드사, 신한카드사 또는 VAN사 통해서 가맹점 계약

(참조) KB국민카드 : 1599-7900 / 신한카드 : 1544-6300

V 그 외 사항

1. 한방의료기관 고운맘카드 사용 관련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준수

<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2013.3)>
지정요양기관 중 한의원, 한방병원은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상병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운맘 카드 지원대상 임신부 진료 후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 상병을 기록 유지
※ 해당상병 :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산후풍)

2. 관련 고시 및 사업지침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5호('13.3.22)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 위치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
-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13.3.22)
- 위치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홈페이지/정보/정책정보/정책사업

3. 고운맘카드 결제 관련

- 진료당일 고운맘카드 미지참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미결제시, 지원종료일 전에 재결제 가능 ... '13.4.1부 (단, 고운맘카드 신청이전의 진료분은 결제불가)
- 5만원 미만 소액 결제시, 단말기의 할부개월란이 활성화되지 않는 오류는 해당 단말기회사에 문의하시어 단말기 업그레이드 받아야 함

